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최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22

제출년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최찬규,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설호영, 박은경
김유숙, 최진호, 선현우
의원(9인)

1. 제안이유

○ 안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의견청취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운영원칙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신청 및 승인, 진행과 관리,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안 제6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예산수반 사항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 ①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안산시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장소·주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④ 주최자(위원회 또는 의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주최자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최자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의회 의원 및 안산시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 산 시 의 회
입안자	시 의 원	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별지 제1호 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소속/직위	
	연 락 처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 주요내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위원장 ○ ○ ○ 또는 의원 ○ ○ ○ (인)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일시/장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발언자의 발언요지	
그 밖의 사항	
비 고	